

# 국가대표 후원사 선정위원회 규정

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

# 국가대표후원사 선정위원회 규정

제 1 조(설치 근거) 본 회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대표후원사 선정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(설치 목적) 본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단 및 본회 후원을 선정하여 소프트테니스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기능)

1. 국가대표 선수단 및 본회 후원사 선정 심의
2. 기타 국가대표 후원용품에 관한 사항

제 4 조(위원회 구성)

1.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 
위 원 장 1인  
부위원장 1인  
위 원 7인 이내
2. 위원장은 본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3. 위원회의 임기는 국가대표 후원사 선정일 당해 연도로 한다.
4.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5 조(회의)

1.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.

제6조(입찰공고) ① 위원회는 국가대표 후원사 선정 시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을 통해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입찰공고는 계약 만료일 기준 늦어도 1달 이내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며 해당 업체에 입찰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다.

③ 공문에는 입찰방법과 입찰제시 내용, 시기, 업체 선정 방법 등을 기록하여

발송한다.

제7조(입찰접수) ① 국가대표선수단 후원업체는 소프트테니스경기와 관련하여 용품을 생산하고 경기활동에 적합한 품질과 규격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접수확정한다.

② 입찰 기한 내에 입찰 업체 수가 1개일 경우는 별도 재 입찰을 공시하지 않고 마감할 수 있다.

제8조(업체 선정) ① 위원회는 입찰을 신청한 업체가 제시한 입찰 내용을 결정 전에 사전 검토를 한다.

③ 입찰업체가 제3조 기능에 의한 점검 내용은 과거 입찰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점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

④ 업체 선정 방법은 5조 제2항에 의한다.

⑤ 계약완료 전 국가대표 후원사에 대하여 그동안 관례대로 사전 협상 우선권을 부여하며 업체 선정 전에 입찰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.

⑥ 입찰접수 업체가 1개일 경우는 단일 업체로 선정한다.

제 9 조(선정업체 확정 및 시행) 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원사는 즉시 효력을 가지나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선정업체의 후원시행은 이전계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제 10 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 협회의 사무처에서 담당한다.

제 11 조(용품처리) 국가대표 후원사가 지급하는 용품 수불은 국가대표 지도자와 후원사 간에 처리하며 그 내용과 결과는 사무처에서 관리한다.

제 12 조(시행 세칙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(시행일) ① 본 규정은 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수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2일 개정 시행한다.

③ 종목 명칭 변경된 사항은 2019년 1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.